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강제노동 위반 수산물 등에 대한 유통 금지 >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9971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성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강제노동 위반 수산물 등에 대한 유통 금지	2
[참고자료]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삼석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6. 7. 15.

3. 회 부 일 : 2026. 7.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반행위로 생산된 수산물이 유통될 경우 적법하게 생산된 수산물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강제근로 등 중대한 노동관계 법령 위반행위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산물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야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공정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 개정).

Ⅲ. 검토의견

1. 강제노동 위반 수산물 등에 대한 유통 금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요건에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7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산물은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u><신설></u> 2. (생략) ②·③ (생략)	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① ----- ----- -----. 1. (현행과 같음) 2.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어업 분야의 노동환경을 살펴보면, 선원 인력의 외국인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2025년에는 외국인 선원 수가 31,878명으로 전체 어업고용 인력의 46.5%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어업 고용인력 현황 >

구분 (단위:명)	2023			2024			2025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합계	64,409	39,167	25,242	63,778	34,508	29,270	68,504	36,626	31,878
어선어업	45,708	30,889	14,819	39,575	23,609	15,966	41,640	25,354	16,286
양식업(소급)	18,701	8,278	10,423	24,203	10,899	13,304	26,864	11,272	15,592

자료 : 해양수산부(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결과)

< 최근 5년간('22년 ~ '26년) 수산분야 강제근로(외국인 포함) 적발 현황 >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금지), 제8조(폭행의금지)

(기준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연도별	위반건수	관할관서	업종	피해자 국적	적발내용
2022	1건	서산	어선	한국인	제8조(폭행)
2023	1건	군산	양식	외국인	제8조(폭행)
2024	4건	군산	양식	외국인	제8조(폭행)
		여수	어선	미상(익명)	제8조(폭행)
		여수	양식	외국인	제8조(폭행)
		여수	양식	외국인	제8조(폭행)
2025	1건	목포	양식	외국인	제8조(폭행)
2026.6	2건	광주	염전	한국인	제7조(강제노동)
		광주	염전	한국인	제8조(폭행)

※ 고용노동부 제공, 해양수산부 작성·제출

□ 현행법¹⁾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산물을 유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²⁾함.

< 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규정(제37조제1항) >

	「원양산업발전법」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물 (제37조제1항제1호)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제37조제1항제2호)
내용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폭발물, 무기,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2. 연안국 관할 수역에서 해당 연안국 정부의 면허, 인가·허가 또는 등록 없이 조업하거나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여 면허,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조업하는 행위 3.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 없이 조업하는 행위 4. 무국적 선박이나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과 전채 또는 공동조업하거나 이러한 선박을 지원하는 행위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

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산물은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물
2. 그 밖에 방사능 오염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산물을 유통한 자

	「원양산업발전법」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물 (제37조제1항제1호)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제37조제1항제2호)
	5. 국제수산물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한 조업금지 구역 또는 기간에 조업하거나 어획을 금지한 수산자원을 직접 조업하는 행위 6. 국제수산물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한 어구·어법으로 조업하는 행위 7. 연안국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8. 합법적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옵서버, 항만국검색관, 공해 승선검색관의 승선·하선을 거부하거나 옵서버를 폭행·감금하는 행위 9. 조업상황·어획실적·양륙량·전재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는 행위 또는 전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재를 하는 행위	(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2. 「수산업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리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수산물 -(수산업법 제55조제1항제1호)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그런데, 현행법은 강제근로 등 중대한 노동관계 법령 위반행위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상황으로, 강제근로 등의 위반행위로 생산된 수산물이 유통될 경우 적법하게 생산된 수산물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강제노동과 관련된 상품의 시장 접근이 차단되는 경향이 확산³⁾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등 강제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생산한

3) 미국은 2026년 7월,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우리나라를 포함한 60개 교역상대국에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유럽연합도 강제노동 결과물의 역내 시장 출시·수출을 금지하는 규정(Regulation (EU) 2024/3015)을 2024년 12월 12일 발효시켜 2027년 12월 14일부터 적용할 예정임.

수산물에 대한 유통 제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 강제노동 관련 조항 >

근로기준법	선원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 선박소유자 및 선원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총톤수20톤 미만의 어선의 선원과 선박소유자 → 「근로기준법」 적용	총톤수20톤 이상인 어선의 선원과 선박소유자 → 「선원법」 4) 적용

위법한 노동력 착취를 통하여 생산된 수산물이 적법하게 생산된 수산물과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어업 분야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또는

4) 「선원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傭船)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2.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3.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선원법」을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에 대한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⁵⁾를 위해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을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에 대한 확인 및 통보 관련 사항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근로기준법」 위반은 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⁶⁾가, 「선원법」 위반은 해양수산부(선원근로감독관)⁷⁾ 및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으로,

5)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산물을 유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6) 「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7) 「선원법」

제125조(선원근로감독관) ① 제123조에 따른 검사와 선원의 근로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원근로감독관을 둔다.

② 선원근로감독관의 자격·임면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선원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선원근로감독관은 이 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을 위하여 선박소유자, 선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선박이나 그 밖의 사업장을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선원근로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 시간·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선원근로감독관은 승무를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다고 인정하는 선원의 진찰을 의사에게 위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받은 의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진찰명령서를 선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27조(사법경찰권) ① 선원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이 법,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선원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제출, 심문이나 신문(訊問) 등 수사는 오로지 검사(檢事)와 선원근로감독관이 수행한다. 다만, 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산지중도매인·가공업자·소매업자·수출업자 등 유통단계의 종사자로서는 취급하는 수산물이 노동관계 법령 위반행위로 생산된 것인지 알기 곤란하다는 설명이나, 개정안에는 위반사실을 확인하거나 관련 정보를 통보받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확인·통보 절차가 없을 경우 개정안에 따른 강제노동 규정 위반과 관련한 불법 수산물 여부를 유통종사자가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행상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위반사실 확인 및 관계기관 간 통보·자료제공에 관한 근거를 함께 마련하는 방안⁸⁾을

8) [참고 입법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이하 각 호 생략)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이행하여야 한다. (이하 단서 생략)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와 감정인에 대한 감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이하 단서 생략)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자사업주가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자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자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운법」

제31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이 제28조제1항,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산업발전법」은 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운영(제19조의29),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사실 보고의무(제13조제7항10) 등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으나, 안 제3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소금산업 진흥법」 제26조제1항제6호11)는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와 같이 위반사실의 확인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유통금지 대상 수산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임.

□ 개정안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강제노동 등 중대한 노동관계 법령 위반 행위로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을 제한함으로써 노동 인권 보

제2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31조에 해당하고 해상운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대신 관계부처에 신고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9) 「원양산업발전법」

제19조의2(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선의 조업감시와 원양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업감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0) **제13조(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⑦ 원양어업자등은 해외에서 연안국으로부터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과 사유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소금산업 진흥법」

제26조(허가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6.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호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강제노동 수산물을 확인하는 즉시 유통 및 수출 차단 조치가 필요
함에 따라 불법 수산물 유통 금지는 관계기관 확인·통보 시점 기준
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에 대한 확인·자료요청 협조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¹²⁾을 제시함¹³⁾.

문 의 처

02)6788-5419

12) [해양수산부 의견]

☐ 유통 및 수출(정부수매) 제한 시점 : 강제노동 해당 수산물 확인 즉시

○ 강제노동 수산물 확인 즉시 유통 및 수출 차단 조치 필요 → 관계기관 확인·통보 시점 기준으로
규정

☐ 유통 및 정부수매·수출 제한 관련, 근로기준법·선원법 위반사실 확인 협조 요청 근거 마련

○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노동청) 및 선원법-해양수산부(지방청)에 대한 확인·자료요청 근거 마련

13)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 발의하려는 의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반요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지만, 재정소요와 관련이 없는 의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
서 또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추계요구서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국
회예산정책처,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2021. p.30.).

참고 1

근로기준법 · 선원법 강제노동 관련 조항

※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선원과 선박소유자 → 「근로기준법」 적용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선원과 선박소유자 → 「선원법」 적용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선원법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 선박소유자 및 선원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167조(벌칙)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3.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제25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참고 2

강제노동 금지 관련 규정 입법례

□ 선원법

- (징역 또는 벌금)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행위 강요 시
- (과태료) 선박소유자가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

< 선원법 >	
【강제근로 및 괴롭힘 금지】 ◎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 선박소유자 및 선원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제25조의3(선내 괴롭힘의 금지)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은 선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선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선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 제167조(벌칙)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2호 생략) 3.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제25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 제179조(과태료) ①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선박소유자의 배우자,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소금산업진흥법

- (허가취소)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행위 강요 시

< 소금산업진흥법 >	
◎ 제26조(허가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호~5호 생략) 6.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